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동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9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7일

발 의 자: 김동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경훈, 김영철, 김원태,
김춘곤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박춘선, 봉양순,
신복자, 유만희, 윤종복,
이봉준, 이원형, 이종태,
이종환, 장태용, 최민규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잔디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과도한 사용과 행사 개최로 인해 잔디 관리가 어려워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증가하고 경기 질이 저하되고 있음.
- 현재 조례에는 체육시설 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 기준 및 관리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실효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임.
- 이에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, 행사·경기 주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시설 잔디 보호를 위해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의4).
- 나. 행사·경기 주최자가 잔디 보호를 위해 사전·사후 관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의4제2항).

다. 체육시설 사용자는 잔디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하고, 잔디 훼손 시 훼손 현황 신고 및 복구·보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14조제4항).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4(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

1. 잔디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한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
2. 동일 기간 내 과도한 사용 또는 행사로 잔디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
3. 행사 또는 경기의 내용·규모·방식 등으로 잔디 손상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강우, 폭염, 한파 등 기상 악화로 잔디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
5.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 행사 또는 경기의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
1. 행사·공연 시 잔디 전체 면적의 50% 이상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

서 제출 및 보호 조치 이행

2. 잔디 훼손 최소화를 위한 잔디 사용 제한 및 기존 구조물(트랙 · 포장 구역 등) 우선 활용
 3. 공연 · 행사 시 잔디 위 관중석 설치 금지 및 부득이한 경우 시장 승인 후 잔디 위 보호물 설치
 4. 잔디 훼손 시 원상복구 계획 수립 및 복구
 5.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
- ③ 사용자는 잔디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사용자는 행사 또는 경기 등으로 체육시설 잔디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, 시장이 정하는 잔디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, 잔디 훼손이 발생한 경우 훼손된 부분의 현황 신고 및 복구 · 보수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4(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</u> <u>1. 잔디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한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</u> <u>2. 동일 기간 내 과도한 사용 또는 행사로 잔디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</u> <u>3. 행사 또는 경기의 내용·규모·방식 등으로 잔디 손상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<u>4. 강우, 폭염, 한파 등 기상 악화로 잔디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</u> <u>5.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<u>② 시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 행사 또는 경기의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</u>

있으며,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
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
수 있다.

1. 행사·공연 시 잔디 전체 면적
의 50% 이상을 보호할 수 있
는 계획서 제출 및 보호 조치
이행

2. 잔디 훼손 최소화를 위한 잔
디 사용 제한 및 기존 구조물
(트랙·포장 구역 등) 우선 활
용

3. 공연·행사 시 잔디 위 관중석
설치 금지 및 부득이한 경우
시장 승인 후 잔디 위 보호물
설치

4. 잔디 훼손 시 원상복구 계획
수립 및 복구

5.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조치

③ 사용자는 잔디 보호를 위한
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,
이를 위반할 경우 제12조에 따
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제14조(사용자 책임) ① ~ ③ (생
략)

제14조(사용자 책임) ① ~ ③ (현
행과 같음)

<신 설>

④ 사용자는 행사 또는 경기 등으로 체육시설 잔디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, 시장이 정하는 잔디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, 잔디 훼손이 발생한 경우 훼손된 부분의 현황 신고 및 복구·보수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5조의4(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) 제1항 및 제2항	○	경기장 잔디그라운드 사용 제한에 의한 대관수입 감소 ⇒ 총 35,804,085천원 소요(연평균 7,160,817천원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경기장 잔디보호를 위한 사용제한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5조의4)

나. 전제

잔디그라운드 사용제한 시 무대설치 비용 증가, 무대 변경에 의한 가수 동선 수정 등으로 대관 미신청¹⁾ 증가

- (해당시설) 서울월드컵경기장 기준²⁾
- (문화행사) 대규모 공연 곤란, 단일 회차의 중규모 공연만 가능
⇒ 2023~2024년 대관현황을 토대로 향후 대관수요 전무 전제(매년 동일 전제)
- (일반행사) 혹서기(8월)에 진행되는 대형 축구행사 대관 곤란
⇒ 2023~2024년 대관현황을 토대로 향후 대관수요 전무 전제(매년 동일 전제)
※ 추계기간(2026~2030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6년~2030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관광체육국 및 서울시설공단(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)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추계

- 1) [공연무대 실태] 유명공연은 해외·전국투어 병행이 일반적이므로 매 공연 동일 구성으로 무대를 설치하나 잔디그라운드 사용 불가 시 무대·동선 구성을 별도로 만들어야 함
⇒ 이로 인해 대관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, 또한 현재 잔디그라운드 관람석 대관 제한으로 경기 고양, 인청 등으로 대관 수요가 분산되고 있어 향후에도 대규모 공연 보다 단일회차 중규모 공연 위주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임
- 2) [추계합리성 측면] 잔디 그라운드가 설치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 추가로 몇군데 더 있으나 32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, 회의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된 입안취지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추계합리성 측면에서 적합할 것으로 보임
⇒ [미고려사항] 참고로 100% 인조잔디인 고척돔은 잔디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어 해당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비용 = 35,804,085천원(연평균 7,160,817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수입	○ 문화행사 대관수입 감소분 (안 제5조의4)	△3,641,395	△3,641,395	△3,641,395	△3,641,395	△3,641,395	△18,206,975
	○ 일반행사 대관수입 감소분 (안 제5조의4)	△3,519,422	△3,519,422	△3,519,422	△3,519,422	△3,519,422	△17,597,110
	소계(b)	△7,160,817	△7,160,817	△7,160,817	△7,160,817	△7,160,817	△35,804,085
	□ 총 비용(a-b)	△7,160,817	△7,160,817	△7,160,817	△7,160,817	△7,160,817	△35,804,085

주 : 서울시 관광체육국 및 서울시설공단(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) 제공자료 등을 토대로 추계

4. 덧붙이는 의견 : 해당 세입감소분 추정액은 2023~2024년 대관수입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으로 잔디 그라운드 제한으로 인해 대관수요가 전무할 경우를 전제³⁾하였기에 이 점을 유의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○ 경기장 잔디보호를 위한 사용제한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5조의4)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35,804,085천원(연평균 7,160,817천원)

$$- \text{산출방식} = \sum_{i=1}^5 (\text{연평균 서울월드컵경기장 세입감소추정액})_i$$

$$i = \text{비용추계 연차(2026년~2030년)}$$

3) 일부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감소폭(소폭 또는 대폭)을 추정할 만한 객관적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관수요 전무를 전제로 추계함

나. 연평균 비용 = 7,160,817천원
= ① 문화행사 세입감소분 + ② 일반행사 세입감소분
= 3,641,395천원 + 3,519,422천원

① 문화행사 세입감소분 = 3,641,395천원⁴⁾

② 일반행사 세입감소분 = 3,519,422천원⁵⁾

4) **[예측근거]** 2024년 동일수준 수요규모 유지 가정한 연간 세입 감소분
※ 세븐틴 977,578천원 / 임영웅 1,438,993천원 / 아이유 1,224,824천원 등 3,641,395천원

5) **[예측근거]** 혹서기 쿠팡플레이 2개년('23년~'24년) 평균 수입 감소분
※ '23년 맨체스터시티vs아틀레티코, '24년 토트넘vs뮌헨 등